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차별행위에 괴롭힘 추가〉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69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차규근 · 김선민 · 김준형 · 김재원 · 박은정
이해민 · 조인철 · 서미화 · 강경숙 · 황운하 · 정춘생
서왕진 · 민병덕 · 정혜경 · 이용우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5. 11. 10.

3. 회 부 일 : 2025. 11. 11.

※ 의안번호 : 1406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의 유형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마목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3. ----- ----- ----- ----- ----- ----- ----- ----- ----- -----

현행	개정안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 ----- -----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2. 현행법상 차별행위 정의 및 구제조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¹⁾는 차별행위를 ① (차별 사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② (차별 금지 영역) ㉠ 고용,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③ (행위 유형)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나아가, 성희롱 행위를 별도로 차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면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거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²⁾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3. 차별행위 유형으로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례

국가인권위원회는 괴롭힘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과 더불어 차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³⁾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괴롭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의견표명을 하면서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서,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규정하였음.⁵⁾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입법례로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음.

[표-2] 괴롭힘 관련 국내 입법례

법률 조문	규정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호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본용어」, 2020, p.135

4) 직접차별이란 특정한 사안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집단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별행위가 전형적인 직접차별에 해당함. 간접차별이란 차별 의도가 없거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구조적, 관행적으로 이뤄진 특정한 실천의 결과 특정한 성별이나 종교, 장애, 나이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이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간접차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p.231~232).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2020. 7. 1.

또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로는,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영국 「평등법」, 뉴질랜드 「인권법」 등이 있음.⁶⁾

[표-3] 괴롭힘 관련 해외 입법례

법률 조문	규정 내용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제3조제3항	괴롭힘: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에 의해 당사자의 존엄이 침해되고 위협, 적대감, 멸시, 품위손상이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도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야기할 때 나타나는 차별
영국 「평등법」 제26조	괴롭힘: 차별사유와 관련해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목적이나 효과가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뉴질랜드 「인권법」 제63조	인종을 이유로 한 괴롭힘: 인종을 이유로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문서를 출판 또는 배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전자통신을 통해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말을 방송하는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2020. 7. 1.

4. 검토사항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⁷⁾

개정안은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괴롭힘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로 명시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괴롭힘을 당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괴롭힘의 개념과 관련하여, 괴롭힘은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소위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⁸⁾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

7) ①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 약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 ② 매년 개최되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대하여 일부 종교단체 및 보수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혐오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표출, ③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였는데, 일부 시민들과 정치권에서 “출근 방해꾼”, “세금 도둑” 등의 비난과 혐오표현 확산, ④ 코로나19 초기 확산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급증, ⑤ 2020년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한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이후 혐오발언과 차별적 행동 발생(임형국,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확장괴롭힘 규정 신설 필요성」, 평등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발제자료, 2025, pp.11~12)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본용어」, 2020, p.135

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 규정된 괴롭힘의 정의 및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⁹⁾ 등에 규정된 괴롭힘의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등에서 규정된 괴롭힘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표-4] 괴롭힘 개념·정의 비교

개정안의 개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등의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서 괴롭힘을 차별개념에 포함한 이유 및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괴롭

9)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0) 개정안은 괴롭힘의 내용을 ‘호’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하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등은 괴롭힘의 내용을 ‘목’으로 세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고립시켜 차별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괴롭힘의 구성요건이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정도로 불명확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음.¹¹⁾

다만, 개정안의 괴롭힘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행위 유형인 특정한 사람·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주관적·추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과거 개정안 등에서 정의된 괴롭힘의 개념, 괴롭힘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설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괴롭힘 개념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괴롭힘의 금지 영역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를 제외한 차별행위는 그 발생장소나 경위가 ① 고용,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되어야 하지만, 성희롱 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¹²⁾

개정안에 따른 괴롭힘은 성희롱 행위와 마찬가지로 고용 등의 영역에 제한됨이 없이 성립하게 되는데, 괴롭힘의 금지 영역을 일정 영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11)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Q&A)」, 2020, p.17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쟁점과 팩트체크」, 2020, p.10

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313

를」 시안에서는 괴롭힘의 금지 영역이 ① 고용, ②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④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한정되었음.

셋째, 괴롭힘과 혐오표현의 관계와 관련하여,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리하였음.¹³⁾

괴롭힘은 혐오표현과 일부 겹치는 개념¹⁴⁾인데, 개정안에서도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괴롭힘의 개념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혐오표현의 금지 또는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¹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의 괴롭힘 개념에 포함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혐오표현 규율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

13)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pp.11~12

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본용어」, 2020, p.136

15) 임형국,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확장괴롭힘 규정 신설 필요성」, 평등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발제자료, 2025, p.13

아니하고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음.¹⁶⁾

넷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목에서 바로 괴롭힘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특정 개인이나 집단에……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을 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문 표현만으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법정화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성희롱 행위의 규정 방식을 참고하여 괴롭힘을 명시하되 그 개념 내용은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② 개정안은 제2조제3호마목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2조에서는 더 이상 집단을 사람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단’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나목, 다목에서 ‘특정 개인’인 아닌 ‘특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16)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Q&A)」, 2020, pp.17~18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표현을 ‘특정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¹⁷⁾

문 의 처
02)6788-5017

-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마. 괴롭힘(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